

# 산업안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에 있어 사무직 및 생산인력부서(은행권 등의 검사업무)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별로 방송교육으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생산인력부서(여직원임)는 은행권을 검사하는 작업장으로써 책상형 작업대에서 의자에 앉아 은행권을 검사하는 작업장이며 소음 등은 발생하지 않음
- 방송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교육시간은 1회 10분에서 30분정도를 반복 방송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짐.
- 또 다른 교육실시 방법 중에 근무시간 매 5분전에 구내 방송을 통하여 매일 전직원에게 방송교육을 실시할 경우 실시방법의 위법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98-43호) 제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 동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근무시간 중 방송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하여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동법 제49조의2에 규정된 공정안전보고서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서 정한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위험예방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이행하는 것으로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동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많은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근거조항을 두고 별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함.



당사에서 시행중인 U-1-1 비축기지 시설공사를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한 후 각 회계연도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분을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괄계약금액으로 할것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된 공사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므로

- 귀사와 같이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연도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일 공사로서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총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일용직 전기공인 재해자가 농사용 전기 인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매설한 길이 10m의 콘크리트 전주위에 올라가 작업중, 전주 매설 주위의 토사가 유실되고 전주 지지와이어로프의 결속 상태가 불량하여 전주가 전도되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452조의2 조항에서 규정된 구조물, 건축물의 범주에 동 재해발생 전주를 포함시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규정을 적용한다면 안정상의 조치의무 주체가 한전측인지 시공회사(재해자 소속회사)인지 여부

피해자인 전기공이 올라가 작업을 한 “콘크리트 전주”는 구조물이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작업구조의 특성상 작업현장이라 할 수 있는 바

- 위 전기공을 고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이같은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에 있어서는 “기매설된 전주”를 동규칙 제452조의2에서 규정한 시공시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포함시켜 적용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동규칙 제452조의3의 규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며



- 한편, “안전상의 조치의무 주체가 한전측인지 시공회사(재해자 소속회사)인지 여부”는 그 사업형태(발주 또는 도급공사 등)를 정확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관련 사항을 적용시켜야 할 것임.



5톤 유압승강기에 5톤이상 하중을 실었을 때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의 유압압력스위치를 설치하였다면  
-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한 방호장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4항 및 양중기(승강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칙(고시 제90-61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라함은 승강기에 정격하중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 또는 경보 등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방호장치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말함.



- 따라서, 귀사에서 설치·사용중인 5톤 유압승강기에 장치된 유압압력스위치가 과부하방지 기능을 가진 방호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방호장치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한 품목이라면 설치·사용하여도 됨

### 참 조

- 1) “양중기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고시 폐지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고시 제97-44호)”으로 통합
- 2) “과부하방지장치”라 함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 제 2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에 호흡용 보호구 지급대상 분진작업 중 옥내 용접작업장에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 동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착용의무부과 여부  
-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출농도는  
- 옥내 용접작업시 국소배기시설 설치로 분진 등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을 때에도 보호구 착용여부  
한국쓰리엠(주)에서 제작공급되고 있는 NO.9913(한국산업안전공단검증 제 76호)을 아주 저농도의 유기용제 발생공정에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에서는 용접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발생작업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의 기본적인 조치 기준으로



-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분진, 가스,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진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구 착용이 면제되는 별도의 노출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호흡용 보호구의 착용)의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분진 작업장소의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
  - 분진 작업장소를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한국쓰리엠 NO.9913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검증 결과 방진마스크용으로 합격 받은 보호구(방진 제76호, '91. 4. 4)로 분진발생 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하나 유기용제등 유기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에 의해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MSDS작성·비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 당사의 동물용 의약품의 MSDS작성·비치에 대한 제외대상 해당 여부와 만일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동 제품의 경고표시 부착시기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완제품)은 설명서 및 용기에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법에서 제외시켰으며,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의약품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료 등은 모든 화학물질로 봄



- 따라서, 수입된 상사의 동물용 의약품이 사업장에서 원료·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동법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MSDS작성 및 경고표시 부착대상이 됨
- 동법의 대상이 되는 수입화학제품의 경고표시 부착시기는 사용 또는 판매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반영되는 사업장에서부터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